



2011년 8월 18일(목) 16:30
대구역자고등학교 시청 과실

대구학생인권연대 숨tong cafe.naver.com/dgsturight | 트위터 @sumtong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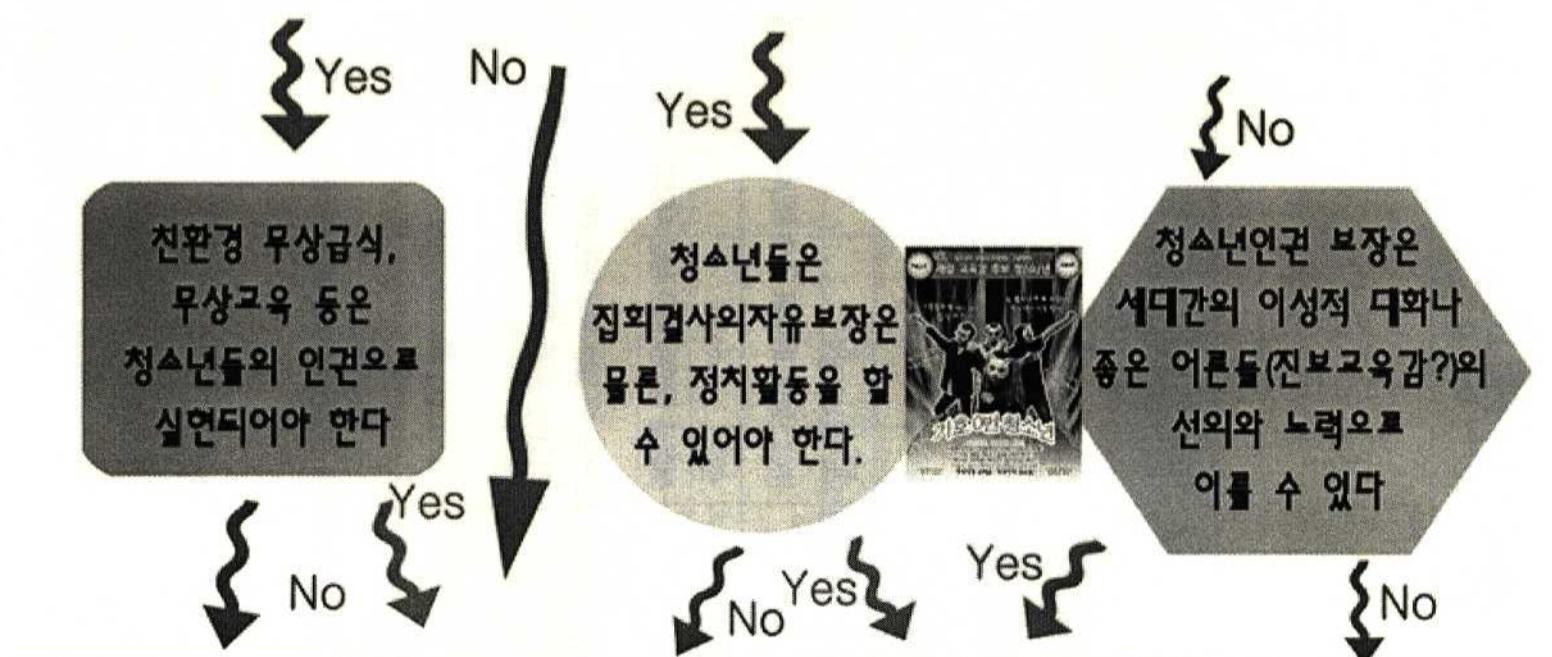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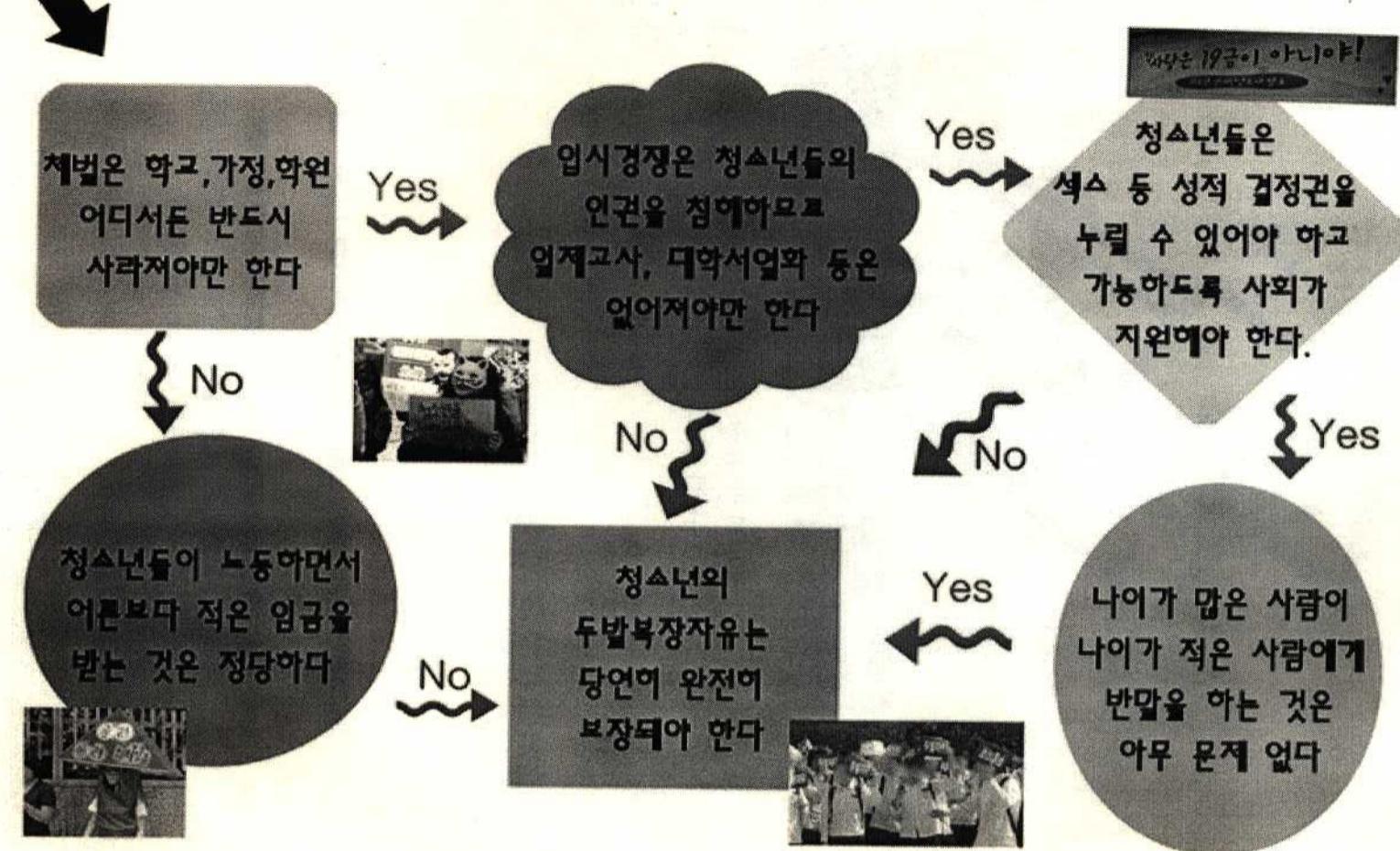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빈딧불이,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대구지역모임



대구학생인권연대 숨tong cafe.naver.com/dgsturight | 트위터 @sumtong05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빛갓불이,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대구지역모임

청소년 인권 개념 & 감수성 테스트



헉스~탈출요망!	혹시 참꾼대?	뛰어난 활동가 후보	이미 청소년운동 중
청소년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일단 유엔아동권리협약 같은 것부터 읽고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청소년인권을 나름 아시는 것 같지만 아직 어른의 관점에서 보호주의 돋는 태도가 엿보여요 한 발만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과 같이 세상을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	당장 토론회에 나가거나 집회 발언을 해도 될 만큼 청소년인권을 좀 아시는군요! 이제 청소년인권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같이 이야기하고 활동해볼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생활 자체가 운동입니다. 혹시 청소년활동가 아니신가요? 현실이 못 따라오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바꿔나갑시다.

목차

	intro	공청회 세부 일정	5
		대구교육(권리)헌장(안)	6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추진과정	14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인권 보호 입법의 필요성 -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15
		'대구교육권리헌장'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 - 달성고등학교 교사 정미석	30
		왜 '대구교육(권리)헌장'인가? - 배움을 꿈꾸는 공간 삼밀 서경희	36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임을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 청소년인권행동 아주나로 유펜디	39
	부록	대구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 <i>mini</i> 보고서	43
		메모(찢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걸 스테프에게 전해주시면 대신 발언해드려요!)	54

공청회 세부 일정

intro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부터	까지		
18:30	19:00	30분	◦ 등록 및 부스활동
19:00	19:05	5분	◦ 영상 시청
19:05	19:08	3분	◦ 개회(사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주나로 도림)
19:08	19:15	7분	◦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추진 과정 브리핑 (시교육청 TF팀)
19:15	19:18	3분	◦ 소개 및 진행발언
19:18	19:38	20분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대구교육권리헌장 (발제: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19:38	19:40	2분	◦ 공청회 진행방법 안내
19:40	20:15	35분	◦ 지정토론(각 7분 이내)
쉬는 시간(5분)			
20:20	20:55	35분	◦ 청중 발언(1인당 2분 이내) 및 질의응답
20:55	21:00	5분	◦ 마무리 발언
21:00	21:05	5분	◦ 폐회 및 광고, 부스 안내

대구교육(권리)헌장 (안)

intro

명칭: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구교육(권리)헌장 (안) 2011.7.28.

전 문

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소중한 만남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생, 교원, 보호자, 교육행정기관, 지역 사회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소망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 한다.

학생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학생 및 교육 관련 주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수업 활동과 생활 지도 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람을 느끼며,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실천한다.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공교육의 책임을 국가에 위임한 자이다. 또한 학생 교육에 대한 동반자로서, 학생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교육 활동이 바람직하게 전개되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며,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를 육성하는 승고한 역할을 다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 이 대구교육권리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민족국가지역, 장애·용모 등의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형태나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징계, 성적(成績)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 또한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 ① 학생은 신체적인 폭력 및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제1항의 권리는 정당한 사유와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학교 내에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생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휴대 전화사용을 규제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징계기록 등의 학생생활기록과 건강검사에 대한 자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은 타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특정 종교 의식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신문 등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간접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은 타인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표현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자치활동 권리

- ①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 소집,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치 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10조 학교 규칙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규칙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규칙의 재개정 과정에서 학생자치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재개정한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체 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청구 및 청원권

- ① 학생은 인권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상담, 조사 등의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생은 인권 침해에 관한 청구 및 청원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 ①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학생의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여학생은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 소수자의 권리

①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운동선수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고, 우선적으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폐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22조 교육활동에 관한 권리

- ① 교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육활동을 간섭 혹은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교원은 교육 활동 중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전문성보장

- ① 교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 내용 선택, 교육 방법 결정, 평가 및 학생 지도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장받는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 연구자로서의 권리

- ① 교원은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 연구자로서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 ③ 교원은 양심과 법령에 따라 연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을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때에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교원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 ① 교원은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신분상의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원은 교육 행정 기관 등 사회 제반 기관과 단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교원은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 ⑤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

- ① 교원은 교육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원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원은 무고한 행위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을 경우 교육 행정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교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교단 복귀를 위한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교원은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교육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① 교원은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원은 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교원은 개인 정보를 보호받아야 한다.
- ② 교원은 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따라 수집·처리·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전문적 단체 조직 및 참여 권리

- ① 교원은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31조 의견을 제시할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 활동 내용을 공지 받을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안건 자료, 회의 일정, 회의 결과 등을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설문의 결과와 활용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부모 등 보호자는 장학생, 수상자, 특별 프로그램 수강자, 추천 등의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조 학생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 폭력, 무단결석, 부적응, 급식 거부 등 자녀 신상의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질병, 장애, 신체작정서적 특이 사항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34조 학생 상담에 관한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상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35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학교규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차별 등 인권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 체벌, 방과후학교 강제 수강 등 학생의 인권이나 자유 선택권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④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⑥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부모 등 보호자는 강제성 모금, 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근절을 위해 교육주체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

- ⑧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36조 무기명을 보장받을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등을 할 때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부모 등 보호자의 무기명을 보장받지 못한 설문 및 평가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37조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학교 급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동료 학생, 교원, 외부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부모 등 보호자는 빈곤, 장애, 학부모 또는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청소년가장 가정, 부적응 학생 등 학생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교복 등 교육 소비재 공동 구매와 관련하여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부모 등 보호자는 학부모회 등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위한 책임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요구받았을 경우 거절할 책임이 있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자원봉사를 할 경우 자발적 의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④ 부모 등 보호자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현장(가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추진과정

intro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권리)헌장 TF팀

2010년 12월

「대구교육권리헌장」(가칭) 제정을 위한 12명의 실무TF팀(위원장 1명, 학생분과 5명, 교원분과 3명, 학부모 분과 3명)을 구성함

~ 2011년 4월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정리하고, 20차례 이상의 실무TF팀 협의회를 가졌으며, 학생 1,124명, 교사 972명,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대구교육권리헌장(가칭)초안을 마련.

~ 2011년 5월

대구교육권리헌장(가칭) 초안에 대한 제정 및 법률적 자문을 위한 6명의 자문위원회(윤석준 대구시의원, 배병일 영남대법학전문대학원장, 이형필 신암초교장, 문정화 대구일보 기자, 이석화 변호사,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를 구성하여 2차례 자문위원회를 개최.

~ 2011년 6월

자문위원들의 의견 및 TF팀의 수정과정을 거쳐 수정된 대구교육권리헌장(가칭) 초안을 가지고 6월 28일 공개 공청회를 가짐.

~ 현재

공청회 결과 및 자문위, TF팀의 논의를 거쳐 대구교육(권리)헌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현재 안(8. 4..)을 마련함. 현재 구체적인 매뉴얼(주석이 포함된 해설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

1) 본 자료집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개된 수정안(7. 28.)이 수록되어 있으며 발제자분들도 그를 바탕으로 발제문을 쓰셨습니다. 8월 4일 최종 수정안은 공개되지 않아 수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 학생인권 보호 입법의 필요성 -

intro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학생인권 보호입법, 왜 필요한가

1) 학생인권 보호입법의 정당성

□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 이행

- 유엔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음. 국가가 직접적인 기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존중(respect)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protect)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실현(fulfill)의 의무'가 바로 그것임.

- 우리 교육기본법 12조와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가 학습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국가의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 법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정부 차원에서 2003년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지울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2006년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일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함. 2004년 학내 종교 자유 보장을 요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 사건, 2005년 학생들의 두발자유 보장 요구, 2006년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 2008년 경기도의 기숙학교인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 2010년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음.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고 역시 지속돼 왔음. 또한 교육부가 2006년 학생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출석시키고 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한 학교가 많지 않음.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권장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보완과 아울러 지방 조례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함. 지난 10월 초

공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적 약자 가운데 대표적인 집단인 어린아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권리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2007년에는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음. 일본에서는 종합조례의 형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가 2000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市)를 필두로 총 13곳에 이르며, 아동 참여나 학대방지 등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동 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도 16곳에 이른다. 그 외에도 시 정책을 추진하는 원칙으로 아동 권리 보장을 정해둔 지자체가 30여 곳에 이른다. 또한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 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어 있는데, ENOC의 구성원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등 29개국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 인권 옴부즈퍼슨을 설치하는 추세 역시 확대되고 있음.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방(8개 지방)에 아동옹호관 또는 아동옴부즈만(children's advocate/ombudsman)이 설치되어 있음. 미국 미시간 주의 아동옴부즈만, 영국의 아동커미셔너, 일본 가와사키 시의 인권옴부즈퍼슨 제도 등이 대표적임.²⁾

□ 국제사회의 교육권(학습권) 보장 기준에 도달³⁾

-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의 보장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P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4P란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제공(Provis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을 말함. 18세 미만 모든 어린아청소년의 인권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인권 실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이 어린아청소년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찾아보기 힘듦.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1.2차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주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교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한 대상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

2) 옴부즈퍼슨(Ombuzperson) 또는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부 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2009)에 수록된 5장. ‘학생인권조례 비교연구와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국내외 모델 비교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3) 학생인권과 교육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에 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와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개발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국가인권위원회, 2007) 1부를 일독할 것을 권한다.

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이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나, 학칙 등 학교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음.⁴⁾

-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의 실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은 필수적임.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4대 의무(4A)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기회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차별없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학습자와 보호자가 육체작정신작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되도록 ‘수용성’(Acceptability)을 보장할 것,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 최선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용성’(Adaptability)을 보장할 것이 바로 ‘4A’에 해당함.⁵⁾ 이 가운데, 우리 교육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2항⁶⁾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학교의 규율이 과연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학습의 양과 학교규율의 정도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고 봐야 할 것임. 곧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안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행사하는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1996년 2월)와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2003년 1월).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52–53 항).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협약 12–17 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内外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6–37항).

5)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6–7항, 그리고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을 참고하면 된다.

6) “학교규율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회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할 것임.⁷⁾ 또한 ‘법의 지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수적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는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후자가 실정법에 대한 기계적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국민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살피고 실정법에 대한 형식적 적용보다는 법의 이면에 놓여있는 ‘법의 일반원리’에 충실한 법적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법의 일반원리 가운데 최고의 원리에 해당함.

-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또한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참여할 기회 역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만 내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또는 28조(교육의 목표) 조항을 통해 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인권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은 도달해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교육권의 핵심적 요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임.

□ 학교공동체의 신뢰 회복

-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상호간에 불신과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높아가는 반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응통성 있게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제시한 규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갈려 있음.

- 학생인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진정, 민원 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진

7)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에 베풀 목이 되는 가치(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능력, 능동적 시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 과정의 행위자인 학생과 교사의 요구가 확인돼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는 교육당국의 명령 또는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은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117항)

정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이는 더 이상 시민들이 학교의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인권의식이 성장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임. 그러나 소송과 진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결정(2003년)
- 초등학생 일기검사 관행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육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결정(2005년)
- 학생에게 두발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2005년)
- 여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해 생리공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정(2005년)
-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근거도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2007년)
- 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작성적 폭력 근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발표(2007년)
- 학생에 대한 조기 등교 강요는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결정(2008년)
- 학생에게도 평화로운 학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2008년)
-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에게만 자율학습 전용실(정독실)을 제공하는 일, 성적 우수자반을 별도 편성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형 공립학원(인재숙)을 운영하면서 성적 우수자만 선발지원하는 것 등은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2008년)
- 수업 도중 학생을 불러내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결정(2008년)
- 학생 명찰을 고정 부착시켜 학교 밖에서도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2009년)
- 학생 비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정(2010년)

-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의 증가 역시 학교 안 인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교육에 힘써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음. 2008년 강릉에서 학생회장 선배에게 맞아 후배가 사망한 사건은 학생들이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음.⁸⁾ 최근 ‘교권 실추 사건’으로 공개된 사건들도 살펴보면, 피해 교사가 신규교사에 짐

8) 조희 시간 불참자를 단속 중이던 강릉 K고 학생회장은 교실에 남아있는 2학년 후배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후배를 숨지게 하였다. MBC PD수첩은 이 사건을 후속 취재하였는데, 당시 인터뷰에 응한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선배에게 대든 후배는 손을 봐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평소의 인식이 비극적인 사건을 키웠다.

중되어 있음⁹⁾을 알 수 있음. 이는 단순히 교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기준에서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학교 안 폭력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먼저 공식적 가치로 인권을 선언하고 예방 교육에 힘쓰는 것이 필요함.

2) 학생인권 보호입법의 긴급성 : 학생인권의 현주소

□ 학생 자살율과 우울감 증가

-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학생 자살자 수가 20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나 증가했음.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과 2008년 사이 성적 비판 자살 학생수가 4.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2위가 자살이고 학생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참혹한 수치도 우리 교육 현실로 자리잡고 있음. 최근에는 학생들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학생 자살율과 우울감의 증대는 다른 요인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삶의 기쁨, 자존감을 심어주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함.

□ 구체적인 학생인권 실태

-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지문위원회의 의뢰로 실시된 경기 지역 학생인권실태 조사 결과¹⁰⁾에 따르면, 초등학생 가운데 △다섯 명 중 하나가 교사에 의한 손찌검을 경험했고(19.3%) △단체별 경험은 45.9% △일기장 검사 경험은 60.6%로 나타났음.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 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잦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 순으로 대답함.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거나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70%를 넘어서.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두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제이발 등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30% 가까이로 집계되었으며, △보충야간 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강제 참여한다는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됨. △체벌을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비율도 35.2%,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9) 지난 2010년 7월 19일 수원 D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모 여교사가 평소 행실이 불량한 B군을 꾸중하던 중 B군이 반발하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말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누나 사귀자'라면서 희통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0) 이 실태조사는 2009년 10월~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학생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진영종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조례안 개발연구」, 2009.

않는다는 답이 40.1%,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0.8%로 나타남. 교사들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97.1%가 동의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학생자치권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압도적 찬성(80% 이상)을 나타냄. 체벌과 관련해서도 전문적 상담과 치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가 92%로 집계됐고,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학생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96.9%로 확인됨.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포함해 청소년인권단체들이 2009년 11월 1일 발표한 「2008년 이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¹¹⁾에 따르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매우 침해되고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46.2%, 같은 내용으로 답한 고등학생이 59.7%였음. 또한 2008년 이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중학생은 4.3%, 고등학생은 4.0%였던 데 반해,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중학생은 28.0%, 고등학생은 32.5%였음.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체벌 경험이 주1회 이상이라고 답한 중학생이 52.1%, 고등학생이 49.9%였음. 체벌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과제나 수업태도(62.3%) △두발·복장 위반(56.4%) △지각결석(44.1%) △교사 지도 불응(28.7%) 순으로 나타냈고, 고등학생은 △두발·복장 위반(55.4%) △과제나 수업 태도(54.8%) △지각결석(52.3%) △교사 지도 불응(34.6%)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체벌 문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두발·복장 규제 등 다른 인권문제와 연동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나아가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중학생은 △성적 차별(59.3%) △외모·신체에 따른 차별(28.4%) △나아학년에 따른 차별(23.3%) △성차별(20.1%) △장애 차별(15.4%) 순으로 답했고, 고등학생은 △성적 차별(69.6%) △나아학년에 따른 차별(27.6%) △외모·신체에 따른 차별(25.9%) △경제력에 따른 차별(15.7%) 순으로 답했음.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경험도 중학생이 6.1%, 고등학생이 3.5%에 달함.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22.4%, 고등학생이 17.0%에 그쳤음.

11) 이 실태조사는 2009년 8월 31일부터~10월 1일까지 전국 중학생 656명과 고등학생 1,3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학생인권보호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생이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이며 우리 교육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권 보호입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학생 인권을 정말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로 귀결됨.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보완

-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인권 보장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의 오랜 요구였음. 이런 요구를 받아 안아 지난 16대 국회에 강제 보충야자 금지, 체벌 금지 등을 명시한 학생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었으나 2007년 말 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조항¹²⁾이 선언적으로 추가되는 정도로 그쳤음. 이런 선언적 규정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서의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함.

- 특히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지역마다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이 법적으로 불평등하게 보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에 관한 전국적인 '최저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초중등교육법의 정비는 필수적 과제라고 봐야 할 것임.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의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학생의 시민정치적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 학생의 경제사화문화적 권리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과 자치권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권리 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교육당국과 학교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체화하여 △학생의 의견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학생인권실태의 정기적 조사 △인권교육 실시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2011년 3월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여전히 '체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음. 시행령 31조 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

12)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는 모든 형태의 벌이 금지된다'는 해석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 체벌만 금지된다'는 해석이 여전히 격돌하고 있음. 이는 교과부가 체벌의 전면 금지라는 대세와 일부 단체의 간접체벌 허용 요구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 빚어진 결과임.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체벌을 '고문'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공식적 금지를 명시적으로 요구¹³⁾하고 있고 세계 각국도 체벌 없는 교육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음. 따라서 이 조항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굴욕감을 주는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임.

□ 교육자치법규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 전국 차원의 법 개정과 아울러 교육자치법규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규법에 근거하여 학생인권 기준을 세부화하는 한편, 교육청과 학교의 인권 보장 책임을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권리구제기구의 신설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두텁게 존중,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가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임.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공시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7조)과 학교규칙에 대한 인가권(8조)을 갖고 있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과 학칙 인가권의 행사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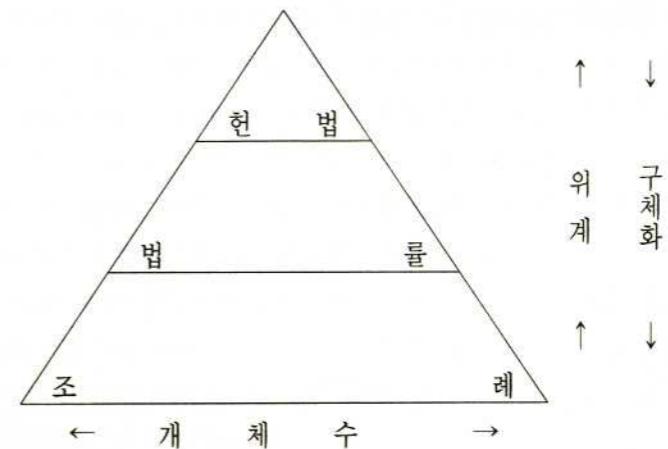
-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이나 학교규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학교의 자율성을 우리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낯선 일이 아님. 일례로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규율규정과 학생의 권리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청 지침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¹⁴⁾

13)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교육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체벌을 포함한 신체형에까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7, 2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까지 100개국 이상이 학교 및 아동에 대한 형사체제에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할 것으로 생각한다(5항). 본 위원회는 체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히 확인하였다(7항). 본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제화하거나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8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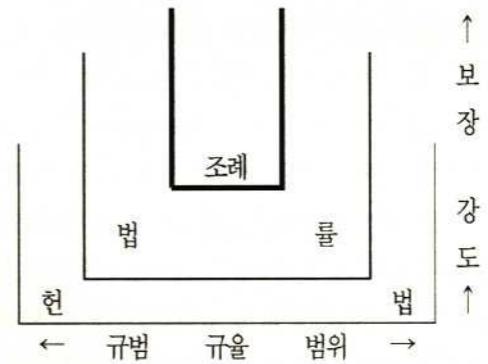
14) 뉴욕시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의 권리로는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표현 및 개인의 자유(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 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징계조치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등)가 포함된다.

- 우리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수준이 아니라 조례 제정이 별도로 요구되는 이유는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 2008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침들¹⁵⁾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위임되는 한편,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2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이러한 조치는 단위 학교의 민주적 참여 통로와 의결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의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인권이라는 중대 사항을 개별 학교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12시까지 또는 토일요일에도 강제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0교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 학교 등이 증가하기도 하였음. 이렇듯 정부 차원의 각종 지침들이 폐지되고 있는 환경에서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보호 지침을 수립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임.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구체적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비판 의견도 있으나, 이는 법률 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9조 2항 5호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조 역시 교육에 관한 사무를 사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게다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학교교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기도 함.¹⁶⁾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유엔아동 권리협약 등 상위법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만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봐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는 헌법과 법률, 학생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¹⁷⁾.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안권보장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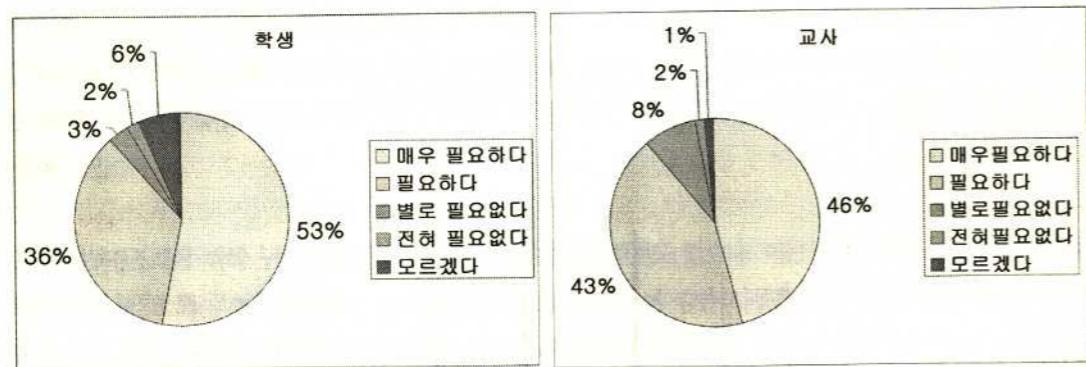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주장 역시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우리 헌법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보는 주장이 터무니없듯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임. 부당한 국가 통제로부터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은 법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는 범위 안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임. 학교장의 재량권이나 학칙 제정권, 학교 자율성 등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학생인권과 비교해 하위의 권리일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규제를 향해 학교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되는 권리일 것임.

15) △수준별 이동수업, 0교시·심야보충과 관련한 학사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총지 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16)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임은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현재 2004.9.23. 선고 2002헌바76 결정; 대판 2006.9.8. 선고 2004두947 판결; 흥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317.

1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자료집」(2010년 1월 19일)에서 재인용.

-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교육주체들 사이에 보편적 인식이 되어가고 있음.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의 교사 15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53.6%, 교사는 45.8%였고,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35.6%, 교사가 42.9%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음. 학부모도 ‘매우 필요하다’가 26.6%, ‘필요하다가’가 61.0%로 집계됨. 그밖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과정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광주와 제주 등 지역에서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이처럼 교육 관련 주체들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드러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건 해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사건 해결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교육 분위기가 깨지거나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따라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별도의 권리구제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일상적으로 환기되고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실천 계획이 지속되어야 함.

-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와 그 밖의 인권 신장 프로그램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드러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건 해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사건 해결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교육 분위기가 깨지거나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따라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별도의 권리구제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일상적으로 환기되고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실천 계획이 지속되어야 함.

3. 대구교육권리현장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이 아니라 조례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

-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교육청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경기도에서는 이미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이 성사되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곧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조례 제정이 예상되고 있음. 그밖에 광주, 전북, 강원, 전남,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조례가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대구교육청만이 ‘현장’이라는 형식의 접근을 취하고 있음.

- 현장이라는 형식은 단지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게다가 대구권리교육현장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범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인권의 기준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해석 다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음. 학교 현장에서 굳어져 온 관행이 시대적 조건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도전을 받으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임. 그럼에도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문제적인 행동이나 지침이 ‘교육’이나 ‘관행’, ‘필요악’ 등의 명분으로 묶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경기, 서울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예를 들어 대구권리교육현장 56조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대리인 선임, 재심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두텁게 만들었음.

대구교육권리현장이 구체적 권리 기준을 제시하기 힘든 이유는 ‘현장’이라는 형식 자체가 구체성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장이라는 형식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임.

- 또 하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주요 오해 가운데 하나는 조례가 ‘학생인권의 기준만 제시한다’는 것임. 사실 사회적 논쟁이 학생인권의 기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더 큰 의미는 학생인권 신장 정책(실태조사, 인권교육, 지원정책 등)과 권리구제기구의 설치에 있음. 막상 인권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회복 절차를 제공하는 것, 학생인권 문제를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꾸준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출현한 주요 배경인 것임.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교육감의 직무조례’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대구권리교육현장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의 직무를 ‘법’이 아니라 ‘현장’으로 규율할 수도 없을 것임. 대구교육청이 ‘현장’이라는 형식을 취했던 이유도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임.

□ 교육권리가 아니라 학생인권으로 출발해야 하는 이유

- 대구교육권리헌장을 보면 ‘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소중한 만남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를 나란히 병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흔히 ‘교육 3주체’로 불리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를 동일한 무게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함. 학생인권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것임. 반면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무상의 권리임. 학부모의 권리 역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형성된 권리라고 볼 수 있음(학교는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 따라서 학생인권은 교원, 학부모의 권리보다 앞선 기본적 권리의 위치를 가져야 함. 학생인권을 출발점 삼았다면, 그 바탕 위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각각의 위치에서 가져야 할 상호책임성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임.

□ 교원의 권리, 더 많은 확장이 필요하다

- 현장 내용 가운데 ‘교원의 권리와 책임’ 장 역시 아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 가장 먼저 현장의 내용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보다 앞선 내용이 거의 없음. 예를 들어 현장에는 ‘교원은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부당한 교원의 징계 문제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징계나 불이익이 먼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현장이 과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게다가 교원의 단체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단체’와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에만 한정시켜 현행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에 대한 언급도 배제하고 있음. 그렇다면 왜 별도의 현장이 왜 굳이 필요한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교원의 권리를 제한하여 선언하는 효과까지 놓고 있음.

-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조항을 둘 수 있음. 반면 현장은 법률 바깥의 문서이기 때문에 권리 영역을 확장하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음. 대구권리교육헌장에 담긴 교원의 권리를 좀더 확장해서 구성하려면, 현장이라는 제한된 문서를 벗어나 별도의 조례로 교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현장에는 교원의 권리로서 수업권, 학문의 자유, 연구활동에 대한 권리, 건강권, 신분보장권, 교권을 보호받

을 권리, 학교 의사결정 참여권, 개인정보 보호권, 전문 단체 조작참여권을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교권’이라 하면 교사의 인권과 직무상의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권리여야 마땅할 것임. 그럼에도 교권을 여타의 권리들과 분리해서 따로 언급하는 것은 교권의 의미를 ‘학생 지도권’에만 한정시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앞에서는 권리를, 뒤에서는 권리를. 질식시키는 문제

- 대구교육권리헌장은 앞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바로 뒤에서는 권리를 폐기할 만한 의무 조항을 곳곳에 삽입함으로써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내고 있음. 학생은 학교 규칙을 재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기만 하면,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칙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을 준수해야만 하는가.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무엇인지 여부를 따지다 표현하는 기쁨을 누려볼 수나 있겠는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어떤 권리의 행사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일반적인 교육적 기대(예: 스스로 선택한 야자니까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와 모호한 도덕적 의무(예: 타인의 문화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당한 도덕적 의무(예: 할 일은 하고 쉬어야 한다)까지도 죄다 현장에 집어넣는 방식은 권리를 질식시킬 우려가 매우 큼. **송tong**

‘대구교육(권리)헌장’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

달성고등학교 교사 정민석

1. 대구교육권리헌장의 의미와 한계

1) 거대한 흐름으로서의 인권

과거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교사도 교실에서 절대적 권력자였다. 교사가 학생을 밭로 차고 막대기를 휘둘러도 ‘사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어떤 학부모들은 ‘더 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교사를 지식의 공급자로, 학부모와 학생을 수요자로 규정했는데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사회적 권위는 떨어졌다. 이미 90년대 말, 교실붕괴니 학교붕괴니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깨워도 자는 학생들,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는 학생들,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은 늘고 학교폭력은 심화되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교육의 본령보다 입시에만 매달린 빼아픈 결과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과거의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권리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권리가 들어서지 못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지탱했던 수직적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 내 교육주체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즉 창조를 향한 다양한 실험의 지점에 학교가 놓여있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인식의 변곡점이 학생인권조례다.

2) 인간은 ‘자기 형성의 자유’가 있다. 인간 주체로서 자각하고 자기의식과 행동의 참주인으로 삶을 꾸려간다. 처음부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고 당연히 자기의식은 채워지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학생의 자기의식에 무엇을 제공할지 고민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다. 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 자존감과 인권, 소통과 참여의 정신을 키우도록 해서 ‘자기 형성’에 생기와 풍요로움을 불어넣어야 한다. 타율과 강제, 지시와 명령, 억압과 금지, 간섭과 통제를 내면화해서 ‘자기 형성’을 빙약과 굴절로 채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자기 형성’의 바탕인 인권에 대해 시교육청이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한다. 지금의 대구교육 현실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개혁적인 부분도 적지 않으나 그 한계도 또렷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구체적 한계

1) 제정 과정의 문제

- 경기도의 사례: 학교현장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실태조사, 학교에 대한 연구 용역(대학연구소), 교수 교장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교육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년여에 걸친 활동, 별도의 정책연구모임, 공청회 3회 및 경기도 지역 내 권역별 설명회, 500명의 학생참여기획단 활동
- 일본 가와사키현의 사례: 처음부터 200명의 학생참여단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2년간의 논의
- 대구시교육청의 과정: 1회의 설문조사, 1회의 공청회, 내부 논의만 27회

경기도는 장기간에 걸쳐 각 주체와 전문가가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력과 실행을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방안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후, 조례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대구교육권리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참여와 준비가 부족했고 전문성과 완결성은 떨어진다.

2) 조항 구성의 문제(밑줄 친 부분은 삭제, 고딕체는 변경된 부분임)

- 제14조: 학생은 타인의 의사를 편견 없이 경청하여야 한다.
- 제15조: 학생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 ③항: 학생은 제·개정한 학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와 제15조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힘양해야 할 생활양식이나 태도의 문제이고 제10조 ③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권리 보장 뒤에 획일적으로 의무 조항을 부과/배치시키다보니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이라는 핵심 교육 의제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3) 규정력에 문제가 발생할 조항

- 제3조 ①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②항: 제1항의 권리는 정당한 사유와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0조 ①항: 학생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10조 ②항: 학생은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자치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전의 제48조: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의 조항은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다. 규정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정력을 강제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제3조①항은 제3조②항에 의해 규정력이 상실되어 선언적 의미만 남게 될 공산이 커다. 두발자율화(교육의 3주체가 결정하거나 혹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으로 결정하거나 학생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가 두발자유화보다 못한 것은 자명하다. 내 머리를 내 아닌 교사나 학생 다수가 결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의 자유는 기본권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어, 두발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두발로 인해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10조①항, 제10조②항, 제11조는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의견을 제출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와 계획, 진행을 전적으로 학교의 판단에만 맡겨, 실질적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위 조항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 권리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3주체의 의식의 대변화와 함께 치밀하고 세세한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대화와 토론, 합의가 필수적이다.

4) 엄격한 단서를 달아서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조항

- 제4조③항: 학생은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이전의 제20조: 학생은 타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소지품 검사를 통한 공의 증진이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학생의 사의 침해보다 클 때만 한정함으로서 <필요한 경우>가 남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5) 즉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조항

- 제5조 ②항: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15조①항: 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 제18조①항: 학생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자율학습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뜻은 단호하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학습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먼저 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수많은 공문을 통해 금지시키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별 신경을 안 쓰거나 무시한다. 시교육청의 의지는 공문에만 있다는 것을 학교가 잘 알기 때문이다. 권리로서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와 이해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3. 대구교육권리현장의 한계와 실현 조건

1)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 부족

대구교육권리현장 제정의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흐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구교육권리 현장 초안이 나오기 까지 TF팀에서부터 학생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500명의 학생참여기획단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세워가는 노력이 대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학생의 입장과 요구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1회의 설문조사, 1회의 공청회만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를 공청회 토론자에서 배제한 것은 공청회 개최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이러한 일은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객체나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 가는 인권지킴이로 역할하게 만들어 인권뿐 아니라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때 매우 어렵다.

늦었지만 교육권리현장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라도 학생대표를 모아 현장의 정신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2) 전문가들의 연구와 참여 부족

헌법학자들이나 인권운동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높여가는 토론과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막바지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지만 자문위원회 구성과정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늦었지만 전문가 그룹과 TF팀의 연설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인 실현 매뉴얼의 제시

어떤 조항은 단위 학교의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정력과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현장이 선언적인 의미로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처럼 5단계 등 예상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 학교 사례처럼 팔굽혀펴기 5회 등으로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 6/22일 김해 교사 초등학생 폭행 사건 등)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의 과정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상호 토론과 교육을 통한 주체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 교사들은 체벌금지 이후 학생생활교육 방안에 대한 집단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준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사회구조의 개선과 교육의 본질 문제

생활지도가 아닌 생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을 가로막는 지나친 입시경쟁구조, 교사와 학교에 대한 지나친 평가 구조, 거대 학교, 잡무 증대, 늘어가는 수업시간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가로막는 수많은 제도와 정책과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이다.

5.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대구교육권리헌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구교육권리헌장의 규범력을 확보하면서, 인권 실현에 대해 공감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의 확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가. 무엇보다 대구 학생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주체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의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를 조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된 교육의 권위를 세우는 바탕이 된다.

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폭력을 동반한 권위주의에 반발해왔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지도에 반항해왔던 이유는 학생지도 방식이 교사나 학교에 따라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기 때문이다. 두발 제한의 기준은 ‘학생답게’ 염고 체벌의 기준은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였다. 이런 모호한 기준 속에 진행되어온 학생지도는 지도의 권위를 잃고 권위의식과 폭력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대구교육권리헌장은 의무조항을 많이 둠으로써 여전히 학생을 지도하려는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정한 상호 존중과 평화 교육의 밑바탕

이 되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존중 받으면서 성장한 학생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 존중할 줄 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의 신장은 교사의 권위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라. 우리나라로 유엔아동18세 미만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은 국내법 중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협약의 실현을 위한 의지가 별로 없고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협약이 생활 속에서 규범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협약은 원칙 밖에 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인권 구제 절차 등이 없다. 조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 학생들의 인권이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인권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규범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지역문화(건강한 지역사회 등)를 창출할 수 있다.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의 구체적 설계로 고민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학부모에게 학교는 연대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바.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상위법 규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다. 지금도 인권 교육을 하거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교칙을 좀 더 인권적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오늘의 교육(교육공동체 벗)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하승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공현 외, 메이데이)

생활교육평론(따돌림사회연구모임)

참교육의 희망, 그 꽃씨로 세상 온통 눈부시게 하리(전교조)

왜 '대구교육(권리)현장'인가?

배움을 꿈꾸는 공간 '샘밑' 서경희

아이 둘을 키우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품고 시간들을 보냈지만 솔직히 '청소년인권'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고민했을까 돌이켜 보면 새삼 지금에서야 조금 부끄러워진다.

내게는 두 딸이 있다. 한 아이는 이제 막 청소년을 벗어나 이십대 청년으로 성장을 했고, 한 아이는 지금 열여덟의 나이를 지나는 청소년이다. 처음 내가 이 발제문을 요청받았을 때 참으로 난감했고, 두려웠다. 부모교육한다고 늘 앞에서 떠들기는 했지만 정작 정말로 내가 '청소년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생각이 있기는 있는지... 혹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몸 어딘가에 새겨지고 자연스럽게 나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문득 의심되고 두려워졌다.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글을 써야할지 맘이 무거웠다.

'청소년 인권'이라.....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다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 것은 '청소년 인권'이니 우선 나하고 일상을 함께 해온 우리 딸들에게 나와의 관계에서 자리했던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지금은 떨어져서 지내는 두 딸에게 전화로 다짜고짜 물었다.

"너 '청소년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우리 사이의 일상에서 '청소년 인권'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다. 물론 왜 이 질문을 뜯금없이 묻는지에 대해 앞뒤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한뒤에 질문을 했다. 생각보다 아이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지금의 질문처럼만 '청소년 인권'이 이야기되지 않았으면 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엄마가 뜬금없이 전화해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 거창하게 물어볼만큼 '청소년 인권'은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야.... 문제는 그 문제가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정말로 청소년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그 청소년이라는 인간을 존중할 맘이 있느냐가 문제지... 그 맘이 우선한다면 일상에서의 이루

어져야 할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사소하고 구체적이고 작고 하찮은 구석에서 먼저 시작되고 지켜질거야. 너무 거창해.... '인권'이라는 문제라고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일상에서 정말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해보는게 나을걸... 지금의 질문도 그렇잖아 마치 뭔가 큰 이념이나 큰 의미가 따로 있는 것처럼 물어보고 고민하는게 어른들이잖아. 실제로 그런 고민은 어른들 잘난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 정말로 우리를 존중할 생각으로 지금 고민하고 묻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갑자기 섭섭함과 짜증이 확 올라왔다.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내가 너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키웠다는 얘기야?"

"이것봐라... 이것봐...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엄마는 내 생각이 엄마생각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한번 그 다른 생각에 대해 곱씹어봐야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나한테 화부터 내잖아..... 배웠다는 사람이 내가 딸이나 청소년이 아니고 어른인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면 엄마가 조심스레 한번 더 생각하고 반박을 했겠지? 그런데 험하게 화부터 내는 이유는 내가 아직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화부터 내도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

가슴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마음 한 구석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청소년인권을 위해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이것을 단 한 문구라도 일상에서 아이들과의 대면에서 주홍글씨 새기듯이 자신의 권리와 내려놓으면서 실천 할 생각이 있느냐이다.

늘 이야기하기를 현실에서의 구조와 부모 선생님 사회인으로서 입장에서의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딜레마'라고 비겁하게 변명하지는 않았나 싶다.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을 따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본인이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있느냐를 먼저 봄아하지 않을까?

법도 필요하다.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청소년과 이 사회 사이에 정확한 개념과 명확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아 들어가는지 벗어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작업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난 인권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물론이고, 내가 어른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청소년인권에 대해 따로 이해하고 공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굳이 '청소년 인권'이라 이름 붙일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닌가 싶다. 그냥 그들도 '사람답게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 아닌가? 그런데 그냥 지금 그들의 환경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위치이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실천되어져야 할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이 아닌가 싶다. 뭘 모르는 나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어렴풋한 밀그림이다. 그런데 이런 뭘모르는 내가,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학부모입장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받아든 '대구 교육 권리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한 다발의 종이 뮤음은 첫 장부터 불편했다.

왜 제목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받는 느낌은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권리를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마치 정작 교육에 관계하는 3자, 부모, 교사, 사회가 자신들이 바라는 청소년을 이해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하는 증거물 같은 느낌이다. "뭔 놈의 '교육 권리'야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고 싶다.

우선 이 제목부터 해명을 들어야겠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일상에서는 단순히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음 만나는 타인에게 당연히 하대를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을 서슴치 않고, 공부를 이유로 그들의 시간은 내가 맘대로 그림그리고 명령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아예 몸에 베여서 자연스러우면서, 그들의 생각과 느낌은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제어되어야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창한 '청소년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떠들어 내놓고는 막상 제목에는 결국 '교육 권리'라는 이름을 내놓았다. 그러니 당연히 내용은 아이들의 존중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라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조항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열해놓게 되는 것 아닐까?

일상에서 소소한 사건들과 마주칠때마다 정말로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할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저 밑바닥에서 내게 올라오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면 아이들과 이야기해봐야겠다.

본인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보장받고 행해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짚어봐야겠다. 제일 먼저 청소년인 우리 둘째 딸에게 먼저 물어봐야겠다.

지금도 머릿속에 의문문이 맴돈다

'왜 청소년인권조례가 교육권리현장으로 될수 있을까? 왜 그렇게 이름 붙여졌을까?' **6+ong**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임을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활동가 유펜디

알려고 노력해도 알수 없는 당신, 대구교육(권리)현장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교육 권리 현장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교육청의 홍보? 공청회 홍보?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 20명에게 물어본 결과 20명 중 20명 전원이 대구교육(권리)현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거든요.

대구교육(권리)현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교육 권리 현장의 제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홍보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고 계시나요? 27일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대구 교육 권리 현장'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는 대구에 교육 권리 현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을 알려주는 기사 2~3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구 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 권리 현장'을 검색해 보아도, 현장 초안이 나오기는 무슨, 기사가 한 개, 우동기 교육감이 쓴 글 한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 초안을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은 이 현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갖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반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역시 아무도 몰랐고요. 이런 식으로 현장을 만들면 독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청회 날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날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시험기간에 평일에 4시라니. 가고 싶어도 전혀 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배려하지 않는 교육청에 행동에 이 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내용 자체도 이 현장을 직접 겪게 될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인권, 존엄한 인간 모두가 가지는 권리

현장의 총칙에 '학생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경악하였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인권에 어째서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인간으로 대접 받기위해 어떤 의무를 하셨어야 했나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으신 분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 대신에 구해다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인간인 그 자체로 그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가 아닌가요? 설마하니 학생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학생에게 법적인 면이 아닌 도덕적인 면까지 요구하는 이 현장은 그냥 학생이면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째서 학생은 무조건 성실하게 행동해야하고, 남에게 욕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좋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남에게 욕을 하는 것 등 도덕적인 것은 학생들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현장은 학생들을 스스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몇몇 조항을 보면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인 소지품검사와 두발제한, 교복 등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불만을 터트리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구교육(권리)현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는커녕 무시하고 있는 건 않을까요?

제가 이제껏 언급한 것만 봐도, 이 현장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보호해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관점과 제대로된 절차를 밟아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인권조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구교육(권리)현장은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어영부영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학생, 교사, 학부모 및 보호자 등의 교육주체들의 교육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전반에 깔려있는 생각과 관점이 학생을 동등한 주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권리부분도 학생의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장보다는 주체로써 학생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 대구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는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교육권리'가 아닌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외침처럼, 학생이 가진 '교육권리'를 외치는 것보다 학생도 '인간'이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외치고 싶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여기 모이신 교사, 학부모, 시민, 학생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니 말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제가 대구교육(권리)현장에서 특히 불편하고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구교육(권리)현장 내용	문제점
제 7조 ②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현재 학교에는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더욱 더 강력한 처벌 또는 직접 체벌을 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반성문이나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반성문이나 서약서에 거부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의 제시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학생들이 실제로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조 ②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 또한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② 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작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③ 학생은 타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④ 학생은 타인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표현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② 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의 의무 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양심과 도덕에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이 내용들은 학생의 의무라기 보다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대구교육(권리)현장에서는 학생의 의무로만 제시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폭넓게 해석되어 적용될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대구교육(권리)현장이 굴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조 ③ 학생은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아니 한다. ⑤ 학생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휴대 전화사용을 규제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아무리 필요한 경우라도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마치 사법기관과 같은 권력이 학교에 있는가? 비청소년들은 동의 없이 누군가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뒤져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소지품을 꺼내고, "이건 위험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가? 비청소년이나 청소년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헌법을 적용받으며,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특히 '정당한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대구교육(권리)헌장 내용	문제점
제 15조 ②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다. 도덕적인 것을 법률적 성격을 지닌 헌장으로 강요할 수 있는가? 만약 교육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 또, 비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도 그 교육에 따른 참여도는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선택권은 참여도와 참여중단에 대한 선택이 보장되어야 선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만일 학생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익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에서는 무기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제18조 ③ 여학생은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	-생리만이 아니라 임신, 출산 및 그와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18조 ④ 학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에게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알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부모나 친척에게도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알리는데 교원에게 건강상태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인권침해적이다. 또한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의 조항에는 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mini 보고서

보고서

대구학생인권연대 숨tong

1. 통계처리방법

1. 통계처리 방법 및 설문구성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총 166개 학교 학생 및 교사 그리고 일반인(학생 또는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자수		
학생	1344	100
일반인	300	100
남구	34	2.53
달서구	174	12.95
달성구	15	1.12
동구	189	14.06
북구	93	6.92
서구	215	16.00
수성구	586	43.60
중구	25	1.86
마음답	8	0.60
중학생	359	26.71
고등학생	965	71.80
기타 및 마음답	20	1.49
남구	31	10.3
달서구	43	14.3
달성구	3	1.0
동구	35	11.7
북구	72	24.0
서구	16	5.3
수성구	60	20.0
중구	27	9.0
마음답 및 기타	10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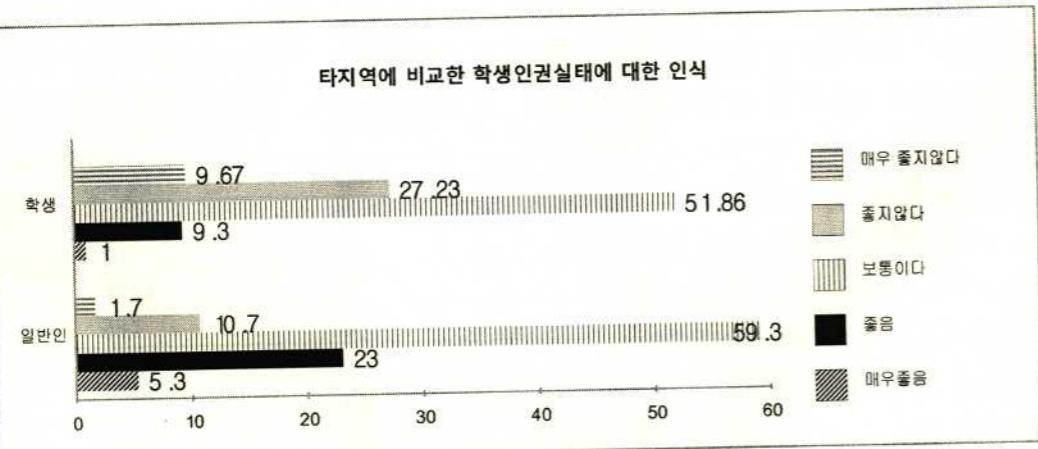
point 1

Q.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인권 보장이 잘 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나요?

[표 1] 학생인권실태 타지역과의 차이에 대한 응답 결과

요인	학생비율	학생응답수	일반인비율	일반인응답수
타지역과 차이 (A1)	마응답	1	13	0
	매우 좋지않다	9.67	130	1.7
	좋지않다	27.23	366	10.7
	보통이다	51.86	697	59.3
	좋음	9.30	125	23
	매우좋음	1	13	5.3
합계		100	1,344	100
				300

타지역에 비교한 학생인권실태에 대한 인식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학생과 일반인 모두 대구지역 학생인권 실태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대답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수준이라고 대답하신 일반인이 28.3%인 반면에, 학생은 10.3%만이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수준이라고 답했어요. 또, 다른 지역이 비해 학생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36.9%나 되었어요. 이건 타 지역에 비해 학생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일반인 12.4%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죠.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대구지역의 학생인권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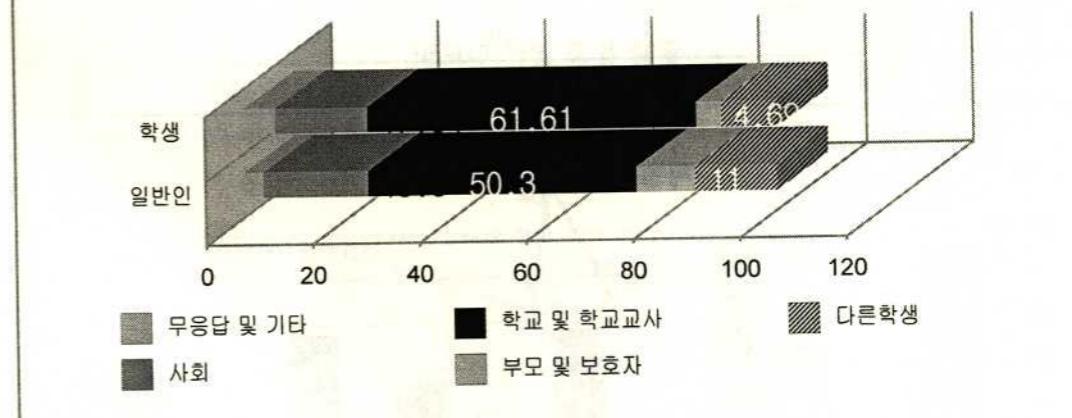
point 2

Q.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많이, 주되게 침해하는 건 누구인가요?

[표 2] 학생인권 침해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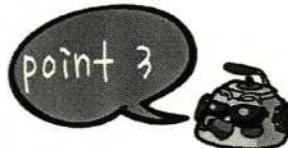
요인	학생 응답수	학생비율(%)	일반인 응답수	일반인비율(%)
학생인권 침해의 주체 (A4)	무응답 및 기타	80	5.95	11
	사회	233	17.34	59
	학교 및 학교교사	828	61.61	151
	부모 및 보호자	63	4.69	33
	다른학생	140	10.42	46
	합계	1344	100	300

학생(청소년)인권 침해의 주체



누가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주되게 침해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학생 및 일반인 모두 학교와 교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응답 역시 학생 17.34%, 일반인 19.6%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학생(청소년)인권 침해의 주체에 대한 인식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생들의 대답과 일반인들의 대답에 있어 조금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학교와 교사에 의한 침해를 학생들이 10% 이상 더 많이 꼽았다는 거죠. 청소년 인권에 있어 학교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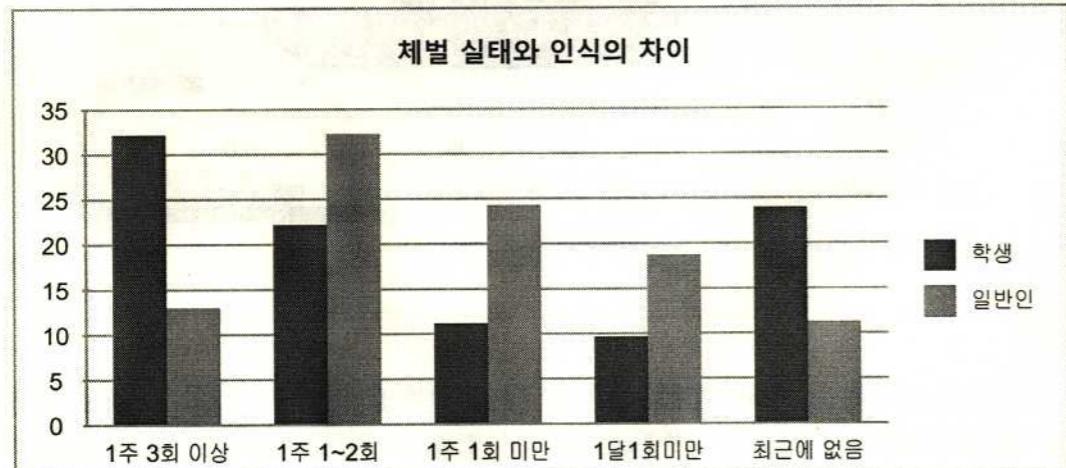
Q. 체벌,
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를 질문했고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의 체벌 경험 실태와 일반인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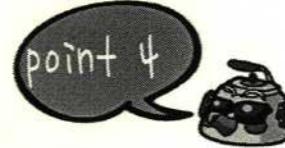
[표 3] 체벌 실태와 인식의 차이

요인	학생응답	학생비율(%)	일반인응답	일반인비율(%)
(B5) 체벌실태	1주 3회 이상	433	32.2	39
	1주 1~2회	298	22.2	97
	1주 1회 미만	150	11.2	73
	1달1회미만	131	9.7	56
	최근 체벌 당하거나 목격없음	322	24.0	34
	미응답	10	0.7	1
합계	1344	100	300	100

체벌 실태와 인식의 차이



대구지역 체벌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벌을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이 1주에 3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32.2%나 되었거든요. 32.2%의 학생이 일상적인 폭력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흐 규 흐 규 엉엉 엉. 또한 일반인의 인식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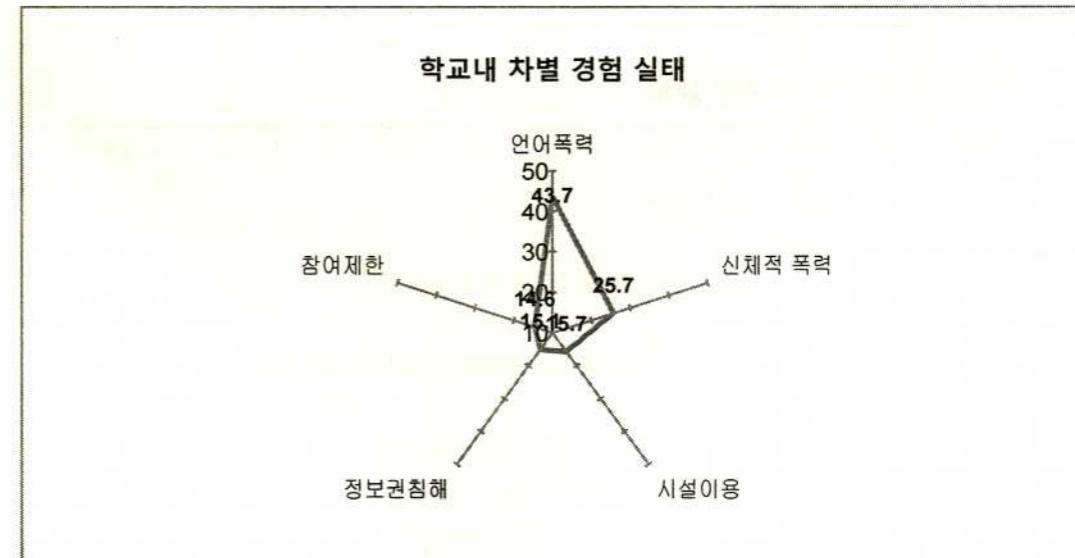


Q. 학교에서 차별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어떤 차별을 경험하셨어요?

※ 경험한 것을 모두 응답할 수 있는 복수응답 가능 문항으로 질문하였습니다.

[표 4] 학교내 차별 경험 실태

요인	학생 수	학생응답비율(%)
D13 차별경험	차별로 인해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587 43.7
	차별로 인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346 25.7
	학교시설의 이용에 있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211 15.7
	차별적인 정보권 침해(진학정보 개인정보 공개)를 당한 적이 있다.	203 15.1
	참여제한(임원출마 등)을 당한 적이 있다.	196 14.6



차별의 유형은 언어폭력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도 25.7%나 되었고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 되어왔던 내용들 예를 들어, 학생회 임원 선거 입후보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거나 시설이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15% 안팎의 차별 경험 실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은 퍼센트가 높고 낯 음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면에서 참 가슴아픈 결과예요.

point 5

Q. 두발이나 복장 규제를 어겨서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으시나요?

※ 경험한 것을 모두 응답할 수 있는 복수응답 가능 문항으로 질문하였습니다.

[표 5-1] 두발 및 복장 위반시 처벌 실태1

요인	학생 수	비율(%)
E16 교복	재검사	876 65.2
	훈계	769 57.2
	소지품 압수	359 27.7
	강제이발	213 15.8
	벌점이나 징계	873 65.0
	작간접 체벌	504 38.5

[표 5-2] 두발 및 복장 위반시 처벌 실태2

요인	학생 수	비율(%)
E16 처벌요인 중복선택수	1개처벌 선택한 학생	335 24.9
	2개처벌 선택한 학생	311 23.1
	3개처벌 선택한 학생	275 20.5
	4개처벌 선택한 학생	194 14.4
	5개처벌 선택한 학생	113 8.4
	6개 처벌 요인 모두	76 5.7

poing 5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요 포인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어겨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아니라 다.중.처.벌.을 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표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봐주세요. 자그마치 28.5%의 학생들이 두발이나 복장으로 인해 처벌받을 때 4가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고 답했어요. 두발이나 복장 규제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접어두더라도 이런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같은 일로 재판을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1회에 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봐서도 옳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벌이 폭넓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의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 두발이나 복장으로 인한 처벌이 굉장히 강한 수준이라는 것도 놀랍죠.

point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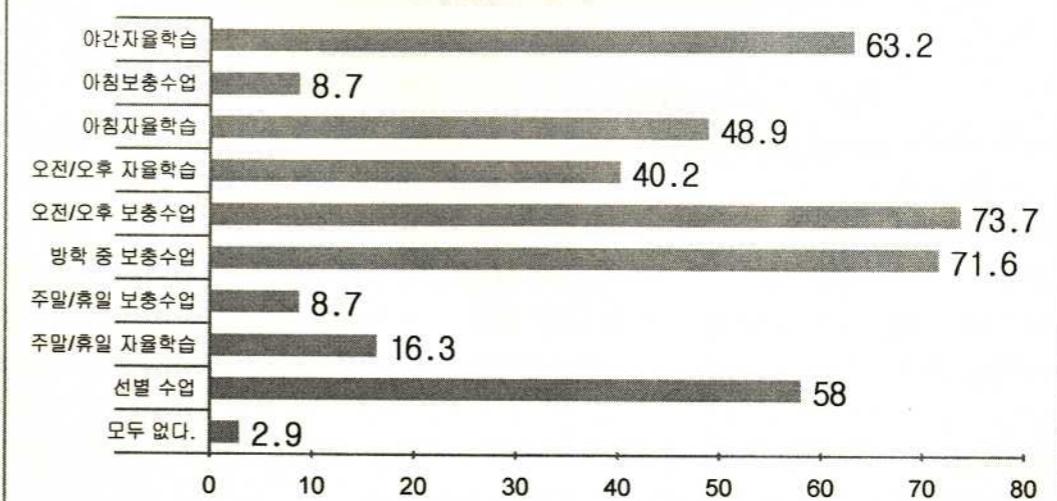
Q.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들, 얼마나 하시나요?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 경험한 것을 모두 응답할 수 있는 복수응답 가능 문항으로 질문하였습니다.

[표 6-1]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 실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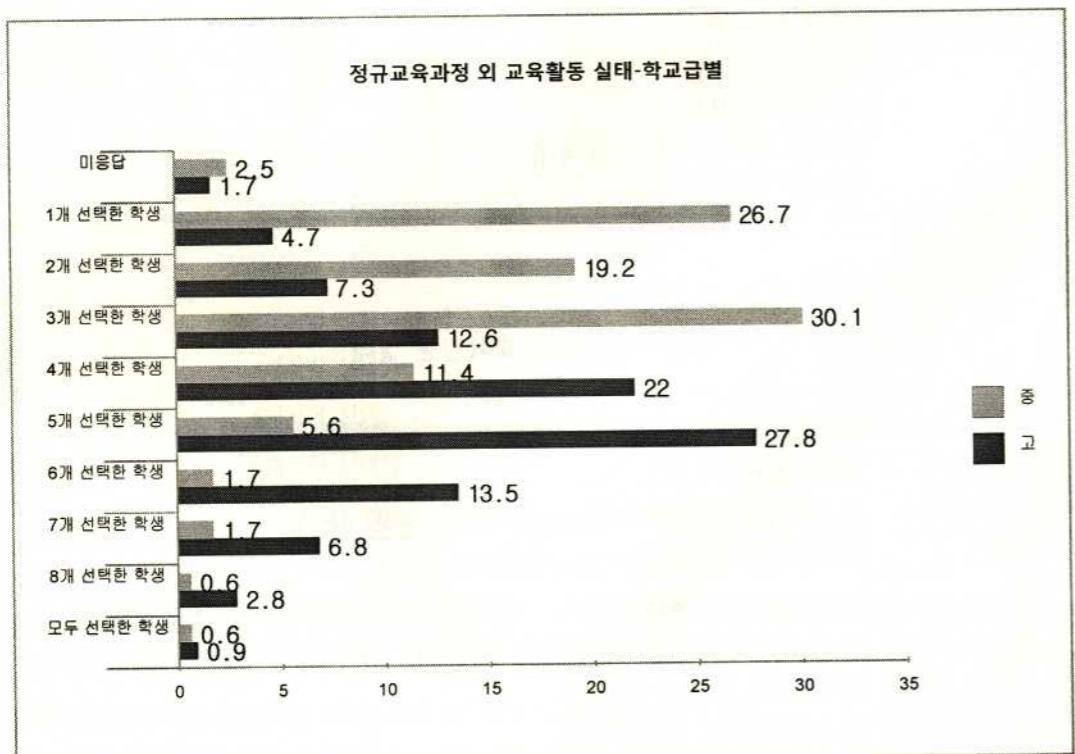
요인	학생 수	비율(%)
E18	야간자율학습	849 63.2
	아침보충수업	116 8.7
	아침자율학습	656 48.9
	오전/오후 자율학습	540 40.2
	오전/오후 보충수업(교과공부 목적)	990 73.7
	방학 중 보충수업	963 71.6
주말/휴일 보충수업		117 8.7
주말/휴일 자율학습		219 16.3
성적부진, 성적우수 기준 선별 수업		780 58.0
1~9까지 모두 없다.		39 2.9

정교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실태



[표 6-2]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 실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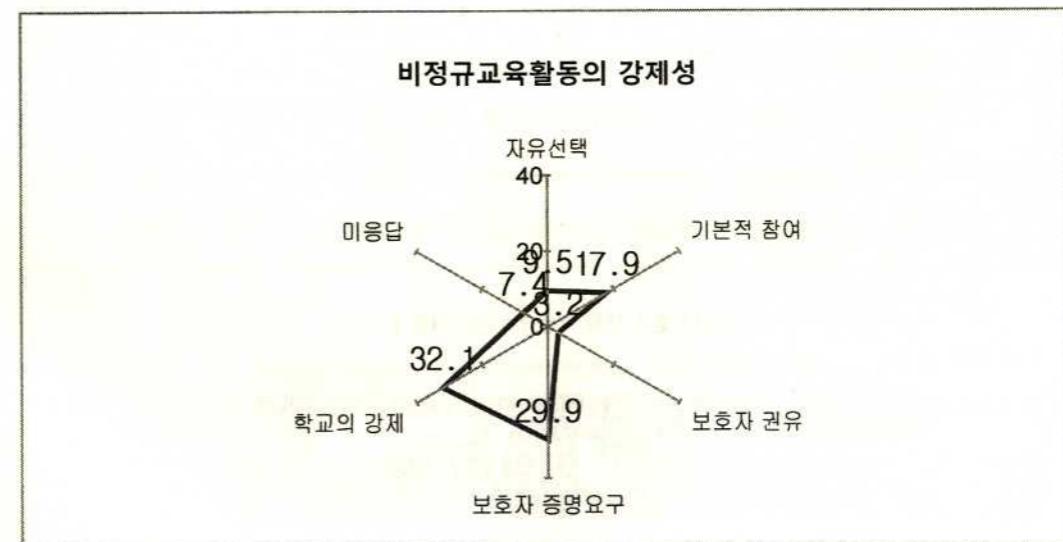
요인	학생 수	비율(%)	학교급별 비율(%)	
			중	고
E18	미응답	27	2.0	2.5
	1개 선택한 학생	147	10.9	26.7
	2개 선택한 학생	141	10.5	19.2
	3개 선택한 학생	232	17.3	30.1
	4개 선택한 학생	257	19.1	11.4
	5개 선택한 학생	290	21.6	5.6
	6개 선택한 학생	137	10.2	1.7
	7개 선택한 학생	72	5.4	1.7
	8개 선택한 학생	29	2.2	0.6
모두 선택한 학생		12	0.9	0.6



예상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비정규 교육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9개 항목 모두를 답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12명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 6-3]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강제성 정도

요인	학생 수	비율(%)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E19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128	9.5	15.6
	기본적 참여, 원하지 않으면 불참	241	17.9	13.9
	학교에서 강제하지 않으나 보호자가 참여를 권유	43	3.2	5
	참여하지 않을수 있으나 반드시 보호자 증명해야 함	402	29.9	12.8
	반드시 참여하도록 학교에서 강제	431	32.1	39.3
	미응답	99	7.4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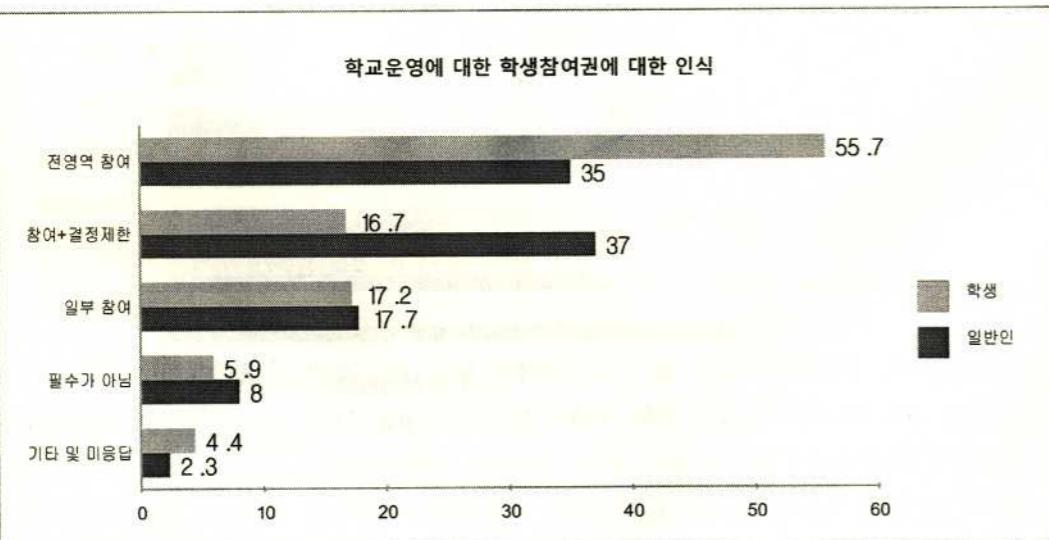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과 같은 것은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 강제적이지 않아야 하는 정규 외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강제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학원 영수증 등을 동원해 증명해야만 강제학습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와 보호자의 증명과 관계없이 무조건 강제인 경우를 합하면 62.0%나 되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에서 신청서나 동의서를 받는 게 무색한 거죠. 교차분석이란 방법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확인해보니 중학교(39.3%), 고등학교(29.0%) 강제시행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36.8%) 중학교(12.8%) 참여하지 않을수 있으나 보호자 증명해야 함으로 나타났어요. 이 수치들의 의미는 강제학습의 종류와 시간은 중학교가 더 적을 수 있지만 강제성 자체는 중학교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point 7

Q.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권,
얼마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표 7] 학교운영에 대해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하는 수준에 대한 인식

요인	학생 수	학생비율(%)	일반인 수	일반인비율(%)
모든 영역에서 참여	748	55.7	105	35.0
모든 영역 참여하나 결정제한	225	16.7	111	37.0
특정 영역에 한하여 참여	231	17.2	53	17.7
f26 학교 운영 참여는 필수적 않음	79	5.9	24	8.0
기타	1	1.1	1	0.3
미응답	45	3.3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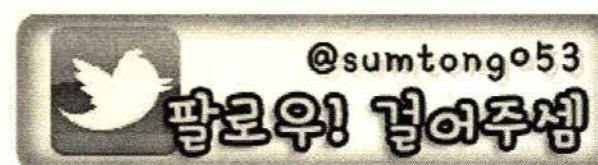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학생은 89.6%, 일반인은 89.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학교운영 전 영역에 대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결정과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과 일반인 간에 차이가 많이 보이네요?

흔히 학교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라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동등한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권 및 결정권한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mini 보고서 어떠셨나요? 대구지역의 학생인권 운동의 행운을 빌어보자는 의미로 럭키 세븐! point 7까지만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시죠?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더 자세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오늘 이 공청회의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읽을거리들도 듬뿍 담아서 예쁘게 만들어진 대구학생인권백서(가칭)은 대구지역 모든 중고등학교에 다 배부될 거랍니다. 도서관에서 먼저 빌리시는 분이 임자! 흥

꼭 찾아서 읽어보고 대구학생인권연대 웹커뮤니티 숨통(cafe.naver.com/dgsturight)에 리뷰도 남겨주세요~~



< 함께 해 주신 분들 >

- 설문문항 제작: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고든, 더소아즈, 박민수, 유펜다, 진냥, 행복한 장자, J아이리스
- 설문결과 코딩: 고든, 김주욱, 김태은, 김형수, 더소아즈, 박영수, 박지선, 유펜디, 이윤경, 이준규, 진냥, 최원혜, 행복한 장자, 흥순환
- 설문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진냥, 행자

메모 : 주목 찢으셔서 질문 또는 의견을 적어 진행스테프한테 주시면 대신 읽어드려요!

메모 : 주목 찢으셔서 질문 또는 의견을 적어 진행스테프한테 주시면 대신 읽어드려요!